

북한인력양성사업 기금지원체계 개선 연구

2020.01

책임연구원 : 김춘순 (순천향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이대웅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김화연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수료)

연구보조원 : 이다솔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본 보고서는 (사)한국정책학회가 통일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결과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통일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목 차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3
3. 기대효과	3
II. 남북협력기금	5
1. 남북협력기금	5
2. 남북교류 현황	26
III. 북한인력양성사업 및 기금지원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32
1. 조사설계	32
2. 북한인력양성사업	35
3. 기금지원체계	48
부록	64
참고문헌	69

Ⅰ 표 목 차

<표 1> 기금운용체계	8
<표 2> 남북협력기금 연도별 조성현황(2019년 11월 기준)	12
<표 3>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 집행현황(2019년 11월 기준)	13
<표 4> 남북협력기금 2019년도 지출총괄표	14
<표 5> 남북협력기금 자산보유 현황	15
<표 6> 남북협력기금 2019년도 지출내역	16
<표 7>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18
<표 8> 남북협력기금 요약	25
<표 9> 남북 인적 교류 추이	27
<표 10> 남북화물 물동량 추이	27
<표 11> 남북 교역 추이	28
<표 12> 대북지원 현황	29
<표 13> 2018-2020년도 주요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30
<표 14> 인터뷰 대상	32

Ⅰ 그 림 목 차

<그림 1>연구의 목적과 주요내용	2
<그림 2>남북협력기금의 법령체계	7
<그림 3>남북협력기금 지원절차	11
<그림 4>남북협력기금 조성액 대비 집행액(2014년-2019년 11월)	17
<그림 5>2019년 11월, 남북협력기금 전체 집행액/분야별 지출액	23

I.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가. 연구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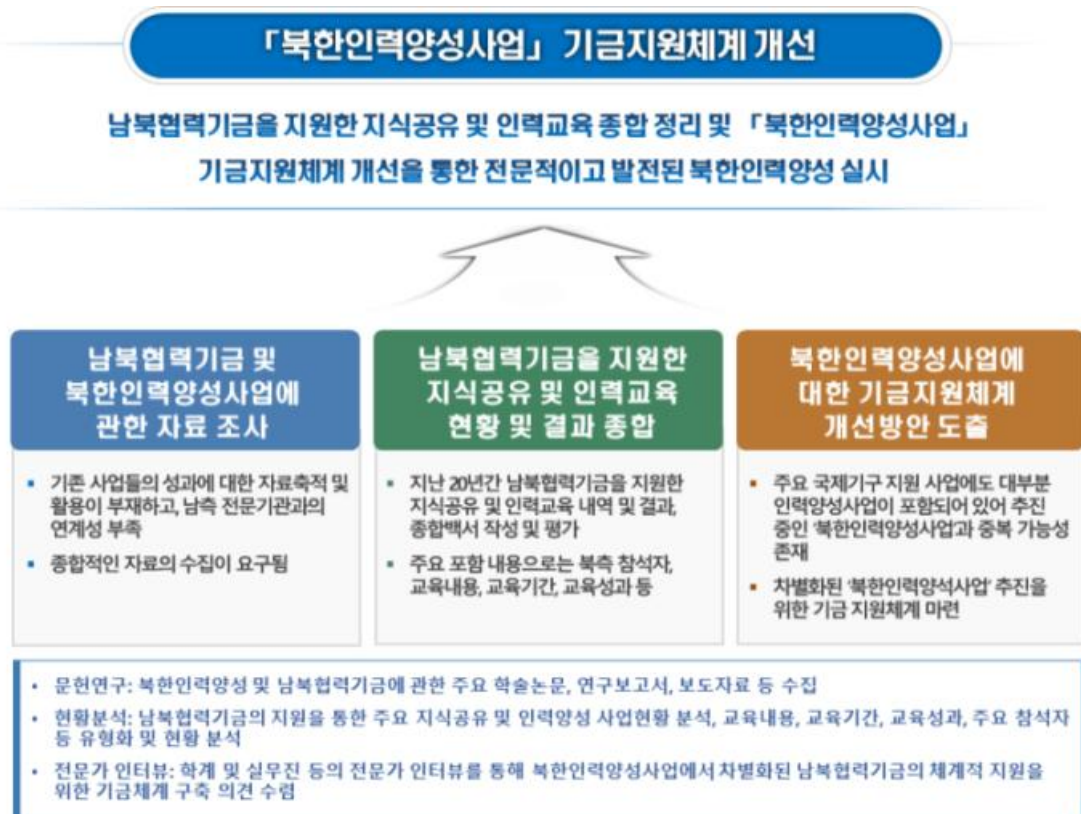
- 남북-국제기구 및 제3국(중국 및 유럽 등) 등을 통한 지식공유 및 북한인력양성 사업 등은 꾸준히 진행
- 특히, 과거 국제기구 및 제3국-북한만 참여하던 행사위주에서 남측 참여가 이루어지는 사업 등이 증가 추세
- 그러나 현재 지식공유사업은 부문적·간헐적이며, 일회성 사업 위주로 진행되어 체계적인 사업 틀 부재
 - 기존 사업들의 성과에 대한 자료축적 및 활용이 부재하고, 남측 전문기관과의 연계성도 부족
 - 이에 우선적으로 기존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요약과 정리 필요
- 아울러 현재의 북한인력양성사업 관련 남북협력기금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북한인력양성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은 다음 <그림 1>과 같음
 - 첫째, 남북협력기금 및 북한인력양성사업에 관한 문헌 및 현황 자료 수집

- 둘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 지식공유 및 인력교육 내역 및 결과 종합
 - 지난 20년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 지식공유 및 인력교육 내역 및 결과, 종합 작성 및 평가
 - 주요 포함 내용으로는 교육기간, 대상, 내용, 장소, 성과 등
- 셋째, 북한인력양성 사업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넷째, 남북협력기금의 운영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그림 1> 연구의 목적과 주요내용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북한인력양성 및 남북협력기금에 관한 주요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보도자료 등 수집

□ 현황분석

-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통한 주요 지식공유 및 인력양성 사업현황 분석
-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성과, 주요 참석자 등 유형화 및 현황 분석

□ 전문가 인터뷰

- 학계 및 실무진 등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북한인력양성사업에서 차별화된 남북협력기금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금체계 구축 의견 수렴

3. 기대효과

□ 정책적 측면

-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 지식공유 및 인력교육 내역 및 결과, 종합백서 작성 및 평가
- 체계적이며 차별화된 ‘북한인력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지원 체계 구축

□ 학술적 측면

-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북한인력양성사업에 대한 부족한 학술적인 관심과 연구 보완
- 특히 향후 체계적인 북한인력양성사업을 위한 기금체계 구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술적 외연의 확대

□ 향후 활용방안

- 향후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식공유 및 인력교육 참고자료 구축
- 향후 ‘북한인력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지원체계 개선 근거 자료 구축

II. 남북협력기금 및 북한인력양성사업

1. 남북협력기금

가. 개요

- 남북협력기금이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임(통일부, 2020)
 - 인적, 물적교류 및 제반협력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의 형태, 방법, 조건이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운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1) 남북협력기금의 설립배경은 다음과 같음
 -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북한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7.7 선언(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1988년 7월 7일)’을 발표하였음
 - 남북한 주민의 상호 교류 및 방문을 허용하며, 남북한 교역을 실시하고 국제사회에 상호 협조하는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이를 통해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음
 - 이후 정부는 꾸준히 남북적십자실무회담 제의(1988년 7월 13일), 남북육당국자회담 제의(1988년 7월 15일), 대북관련 외교정책 시행방침 발표, 북한 자료개방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였음
 - 1988년 10월 ‘대북 물자교류에 관한 기본지침’을 발표하였고, 북

1) 통일부 홈페이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interkoreanfund/intro>)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한과의 교역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었음

- 민간상사의 북한물자 교역 허용
- 민간상사의 북한물자 중개 허용
- 북한물자의 원산지 표시 및 상표 부착 허용
- 작·간접 교역물자에 대한 관세 미 부과
- 남북 경제인 상호 접촉 및 방문 허용
- 북한선적의 상용선박 입항 허용
- 남북한 경제교류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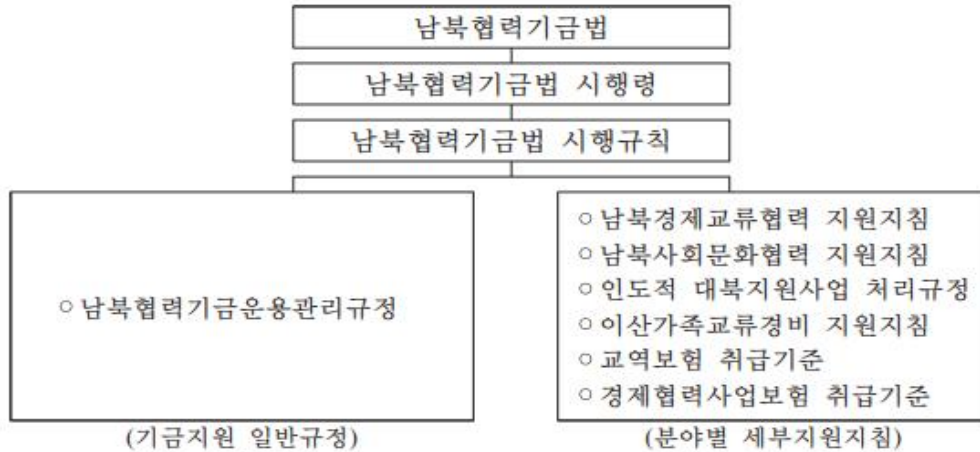
-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4239호)」 과 「남북협력기금법(법률 제4240호)」 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법을 바탕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였음

□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법」 은 총 1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 시행규칙, 운용관리규정(통일부 고시) 등의 하위규정과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등 분야별 세부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남북협력기금법」 은 지금까지 두 차례의 개정과 정부조직 개편 및 다른 법률 제·개정에 따른 자구 변경 등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틀에서는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 2009년 5월 28일 시행된 개정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의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자 및 기금을 사용한 자가 기금사용 계획 및 기금사용 결과를 각각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음
 - 2010년 9월 27일 시행된 개정을 통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측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 등 경영 외적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보상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록 이와 관련된 손실보조 또는 보험 항목을 추가하였음

<그림 2> 남북협력기금의 법령체계



*출처: 이무일(2009: 68-70), 한국법제연구원(2012: 51)

-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는 다음과 같음(「남북협력기금법」 제7조)
 -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주요정책 심의기구)와 한국수출입 은행(기금수탁관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표 1> 기금운용체계

<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심의 ■ 기금운용계획 심의 ■ 결산보고사항 심의 ■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 기금운용관리의 주체 >	
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 ■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방침 결정(기금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 기금지원업무의 실무 담당 >	
한국수출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의 관리(기금계정 관리, 회계사무 처리, 여유자금 운용) ■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상담 및 심사 ■ 지원자금의 집행 ■ 지원사업 및 지원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출처: 통일부(2008)

-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 및 재정·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 기금운용계획
 - 결산보고 사항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5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대리출석하여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협의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승인이나 그 취소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3. 제14조에 따른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5.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6. 관계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남북협력기금의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음(「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용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추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용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損失補填)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나. 기금 지원절차

□ 남북협력기금 지원절차는 다음 <그림 3>과 같음

- 우선 기금 사용을 희망하는 자가 통일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일부는 내부검토와 필요한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의 심사보고서를 받아 사전 검토를 함
-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한 후, 통일부 자체 심의기구인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심의와 남북교류협력추진협

의회의결을 거쳐 기금지원을 결정함

- 지원규모 및 성격에 따라 주민왕래 및 사회문화협력의 경우 3억원 - 5억원 미만, 30억원 미만의 교역대출과 50억원 미만의 경험 대출 등 경미한 규모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없이 통일부장관이 결정함

- 기금지원 결정이 승인되면, 통일부는 한국수출입은행에 기금집행을 의뢰함. 수출입 은행은 기금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기금을 지원하고 기금지원이 완료된 후 기금사용자로에게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사용결과를 보고함(<그림 3> 참고)

<그림 3> 남북협력기금 지원절차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https://www.unikorea.go.kr>)

다. 조성 및 사용실적²⁾

□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설치된 이래 2019년 11월까지 총 14조 4,741억원 조성이 되었음. 남북협력기금 연도별 조성현황은 다음 <표 2>와 같음

- 2019년 11월 기준으로, 정부출연금 5조 2,405억 원, 민간의 자발

2)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사용실적 부분은 남북협력기금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적인 출연금 27억 원, 국채 발행을 통해 조성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8조 2,446억 원, 기타 운용수익 등 9,862억 원 등 총 14조 4,741억 원이 조성되었음

〈표 2〉 남북협력기금 연도별 조성현황(2019년 11월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정부출연금	정부외출연금	공자기금예수금	운용수익등	총조성액
합계	5,240,514	2,733	8,244,674	986,271	14,474,192
2019. 11	100,000	-	200,000	6,181	306,181
2018	63,711	11	278,400	12,153	354,275
2017	183,000	1	765,000	9,631	957,632
2016	92,500	1	207,000	27,399	326,900
2015	93,203	238	90,500	19,863	203,804
2014	93,400	-	228,600	47,304	369,304
2013	105,500	3	530,000	162,300	797,803
2012	112,800	2	400,000	51,236	564,038
2011	-	2	104,400	38,276	142,678
2010	-	-	875,000	51,238	926,238
2009	-	56	81,000	74,354	155,410
2008	650,000	52	147,500	49,274	846,826
2007	500,000	75	584,591	38,859	1,123,525
2006	650,000	15	940,000	36,619	1,626,634
2005	500,000	33	460,000	31,178	991,211
2004	171,400	1	310,000	38,372	519,773
2003	300,000	1	823,000	46,515	1,169,516
2002	490,000	77	505,000	42,035	1,037,112
2001	500,000	1,079	310,000	29,406	840,485
2000	100,000	542	254,852	30,393	385,787
1999	-	3	149,831	23,013	172,847
1998	-	-	-	40,280	40,280
1997	50,000	288	-	27,874	78,162
1996	100,000	132	-	18,409	118,541
1995	240,000	119	-	14,589	254,708
1994	40,000	1	-	9,387	49,388
1993	40,000	3	-	4,778	44,781
1992	40,000	-	-	5,118	45,118
1991	25,000	-	-	237	25,237

*출처: 통일부(2019: 4). 2019년 11월말 남북협력기금 통계

□ 남북협력기금 최근 5년간 집행현황은 다음 <표 3>과 같음

- 최근 5년간(2019년 11월말까지) 기금 집행은 경상사업의 경우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3,350억 원,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에 5,725억 원, 용자사업의 경우 1,096억 원으로 총 1조 172억 원이 집행되었음

<표 3>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 집행현황(2019년 11월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금종류	'14	'15	'16	'17	'18	'19.11	합계
경상 사업	남북교류 협력지원	인적왕래지원	460	-	-	74	2,496	11	3,041
		사회문화협력지원	2,847	6,135	2,303	3,599	7,481	3,673	26,038
		경제교류협력보험	52	77	295,353	97	9,604	828	306,011
		소 계	3,359	6,212	297,656	3,770	19,581	4,512	335,090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23,397	4,781	4,122	4,193	4,154	6,793	47,440
		이산가족교류지원	3,083	5,241	1,620	689	5,097	3,548	19,278
		인도적지원	14,765	12,127	633	1,322	2,661	27,959	59,467
		경협기반조성(무상)	20,685	23,440	149,413	55,767	177,659	19,400	446,364
		소 계	61,930	45,589	155,788	61,971	189,571	57,700	572,549
	합 계		65,289	51,801	453,444	65,741	209,152	62,212	907,639
용자 사업	인도적사업(용자)		-	-	-	-	-	-	-
	남북교류 협력지원	교역경협자금대출	19,000	-	72,806	-	-	-	91,806
		-교역대출	2,993	-	-	-	-	-	2,993
		-경협대출	16,007	-	72,806	-	-	-	88,813
		경협기반조성(유상)	3,289	3,556	3,201	2,656	2,574	2,574	17,850
	경수로사업	경수로사업대출	-	-	-	-	-	-	-
합 계		22,289	3,556	76,007	2,656	2,574	2,574	109,656	
총 계			87,578	55,357	529,451	68,397	211,726	64,786	1,017,295

*출처: 통일부(2019: 4). 2019년 11월말 남북협력기금 통계

□ 남북협력기금 2019년도 지출총괄내역은 다음 <표 4>와 같음

<표 4> 남북협력기금 2019년도 지출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8계획 (A)	'19계획 (B)	증감 (B-A)	%
남북협력기금 총계		1,618,242	1,490,298	△ 127,944	△ 7.9
○	사업비	959,266	1,103,583	144,317	15.0
	1. 통일정책	6,341	6,341	-	-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6,341	6,341	-	-
	2. 남북사회문화교류	12,942	20,530	7,588	58.6
	- 사회문화교류지원	12,942	20,530	7,588	58.6
	3. 인도적문제해결	595,414	572,345	△23,069	△3.9
	- 이산가족교류지원	11,985	39,510	27,525	229.7
	- 구호지원	352,438	81,539	△270,899	△76.9
	- 민생협력지원	230,991	451,296	220,305	95.4
	4. 남북경제협력	313,378	473,176	159,798	51.0
	- 경제교류협력보험	10,000	9,500	△500	△5.0
	- 경험기반(무상)	247,978	309,281	61,303	24.7
	- 경험기반(유자)	20,000	119,655	99,655	498.3
	- 경제교류협력대출(유자)	25,000	23,750	△1,250	△5.0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	-	-	-
	- DMZ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개발	10,400	10,990	590	5.7
	5. 개성공단 조성	31,191	31,191	-	-
	- 개성공단 운영대출	15,071	15,071	-	-
	- 개성공단 기반조성	16,120	16,120	-	-
○	기금운영비	3,134	2,739	△395	△12.6
	- 기금관리비	150	100	△50	△33.3
	- 위탁수수료	2,270	2,250	△20	△0.9
	- 사업관리비	714	389	△325	△45.5
○	공자기금원리금상환	375,241	303,873	△71,368	△19.0
	-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278,400	203,000	△75,400	△27.1
	-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96,841	100,873	4,032	4.2
○	여유자금운용	280,601	80,103	△200,498	△71.5

*출처: 통일부(2019: 4). 2019년 11월말 남북협력기금 통계

□ 남북협력기금의 자산보유 현황은 <표 5>와 같음

<표 5> 남북협력기금 자산보유 현황

구분	'17년 말(잔액)	'18년 말(잔액)	'19년 말(추청)
합계	31,460	29,606	30,9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자산 - 한은예치 - 통화금융기관예치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국채매입 - 국채외 채권매입 - 주식매입 - 기타 민간예치 	2,817 1 602 2,214 - - -	814 - 562 252 - - -	801 - 513 288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내부거래 - 타회계 예탁 - 타기금 예탁 - 부문간 예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 토 지 - 건 물 - 기 타 	571 385 186 -	561 375 186 -	550 364 18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자산(미수수익 등) 	28,072	28,231	29,582

□ 남북협력기금 2019년도 지출내역은 다음 <표 6>과 같음

<표 6> 남북협력기금 2019년도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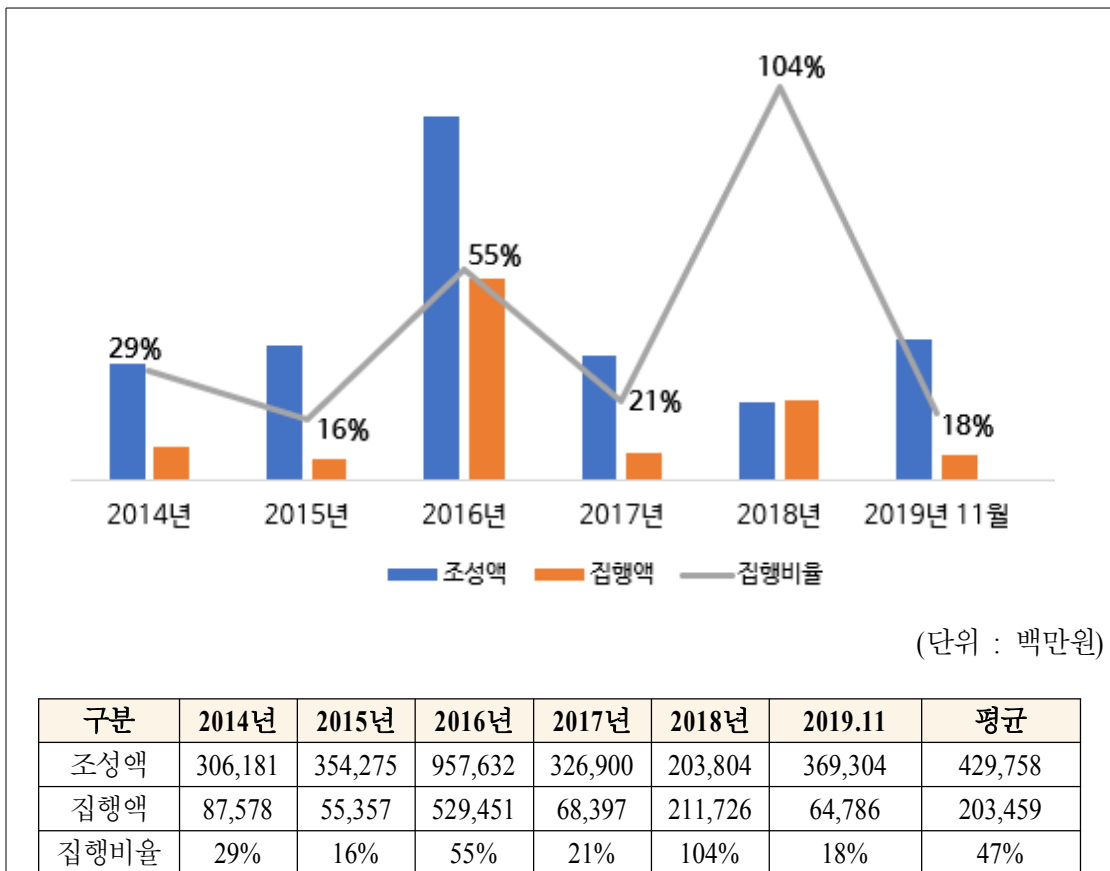
구분	내역		금액	
무상지원	통일정책	2019년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지원 등 77건	6,793	
	남북사회문화교류	2019년 거래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지원 4건	2,802	
		제26차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지원 3건	113	
		남북 태권도시범단 국제기구 합동공연 지원 1건	111	
		2019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기금 지원 1건	642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총회 남북 종교인 공동행사 지원 1건	5	
		2019년 아시아 유소년 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 참가 지원 1건	11	
	이산가족교류지원	2019년 이산가족 교류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8건	116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건	2,779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지원 2건	483	
		이산가족 영상편지 장비 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4건	170	
	인도적지원	인플루엔자 관련 대북물자 지원 1건	3,394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지원 4건	705	
		남북공동 유해발굴 자재장비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11건	504	
		남·북·국제사회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기금 지원 4건	106	
		WFP·UNICEF 북한 영양지원·모자보건 사업 지원 2건	9,468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WFP) 1건	13,782	
	경협기반조성(무상)	경협기반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정상화 5건	282
			2019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 지원 등 39건	5,425
			2019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 및 위탁사업 지원 4건	2,731
			2019년 대북 반출입물자 전락물자 전문판정업무 위탁 지원 6건	62
			남북경협·교역·금강산기업 피해 지원 5건	1,236
			DMZ 평화둘레길 조성에 대한 기금 지원 등 11건	3,442
		경협보험	OOOOOO(주) 등의 경협보험 1건	828
	개성공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지원 4건	6,221	
	소 계 (202건)			62,212
유상지원	개성공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지원 4건	2,574	
	소 계 (4건)			2,574
총 계 (206건)			64,786	

*출처: 통일부(2019: 4). 2019년 11월말 남북협력기금 통계

□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액 대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4>와 같음

- 남북협력기금은 최근 5년동안 평균 47% 집행되었으며, 남북정상 회담이 이루어진 2018년 가장 많은 협력기금이 지출됨(집행율: 104%)
- 지난 5년간 협력기금의 집행비율이 47%이지만, 연도별 차이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14년, 2015년, 2017년, 2019년에는 집행률이 30%에 미치지 못함
- 2016년의 경우 2015년에 비하여 2.5배가 넘는 기금이 조성되기도 함

<그림 4> 남북협력기금 조성액 대비 집행액(2014년-2019년 11월)



- 남북협력기금 조성재원은 주로 국고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8년 남북협력기금 조성내역을 보면 정부출연금인 약 18%,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약 78.5%로 전체 조성액의 96.5%가 국가재정으로부터 마련됨
 - 반면 유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금들은 비교적 자체수입의 비중이 남북협력기금보다 높고 국가재정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 1972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정부출연금 이외에 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 전체 기금 중 96%가량이 자체수입임
 - 1991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제교류기금도 기금조성의 36.2%가량을 자체수입(워크숍, 강의 등)으로 조성
 - 1995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기금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과 기부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체 수입 중 35.2%가량이 자체수입으로 마련됨

<표 7> 기금조성 현황 및 계획

(남북협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국제교류기금/응급의료기금 비교)

(단위: 억원)

남북협력기금						
구분		17년(누계)	‘18년 실적		‘19년 계획	
			당년	누계	당년	누계
총 조 성	• 출연금	50,795	637	51,432	1,002	52,434
	- 정부출연	50,768	637	51,405	1,000	52,405
	- 민간출연	27	0	27	2	29
	• 부담금					
	• 차입금	77,663	2,784	80,447	11,531	91,978
	- 특별회계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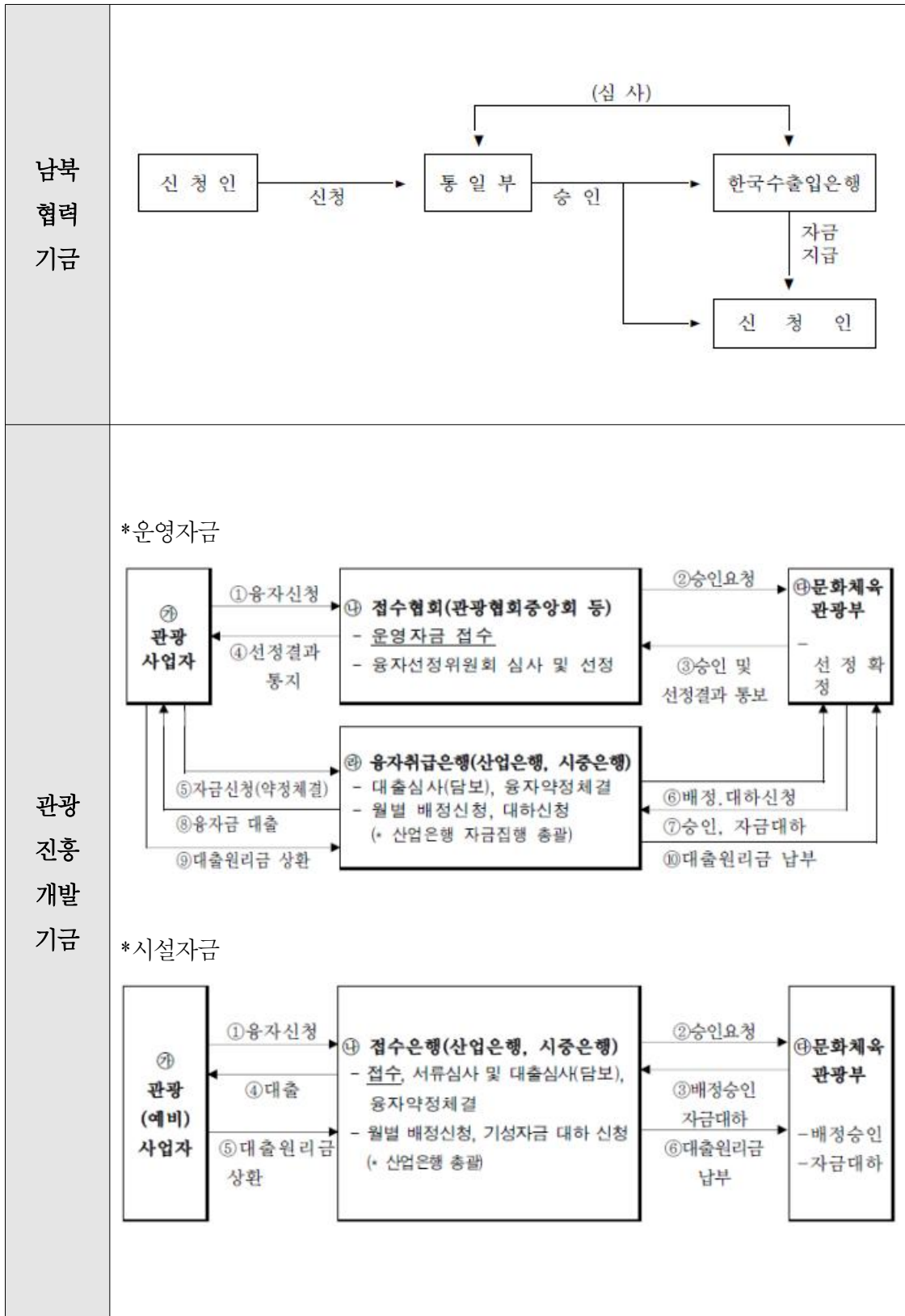
	- 공공기금	77,663	2,784	80,447	11,531	91,978
	- 한 은	-	-	-	-	-
	• 운영수입	9,679	188	9,867	774	10,641
	- 이자수입	7,878	127			
	- 재화 및 용역	124	1			
	판매수입	1,677	60			
	- 기타	2,565	479			
	- 평가계정					
	소계	140,702	4,088	144,790	13,857	158,647
관광진흥개발기금						
	구분	17년(누계)	‘18년 실적		‘19년 계획	
			당년	누계	당년	누계
총 조 성	• 출연금	802		802		802
	- 정부출연	802		802		802
	- 민간출연	-		-		-
	• 부담금	59,335	5,649	64,984	6,838	71,822
	• 차입금	-	-	-	-	-
	- 특별회계	-	-	-	-	-
	- 공공기금	-	-	-	-	-
	- 한 은	-	-	-	-	-
	• 운영수입	10,912	492	11,404	576	11,980
	- 이자수입	8,963	100	9,063	110	9,173
- 재화 및 용역	-	-	-	-	-	
판매수입	1,949	392	2,340	467	2,807	
- 기타	-	-	-	-	-	
- 평가계정						
	소계	71,049	6,141	77,190	7,414	84,6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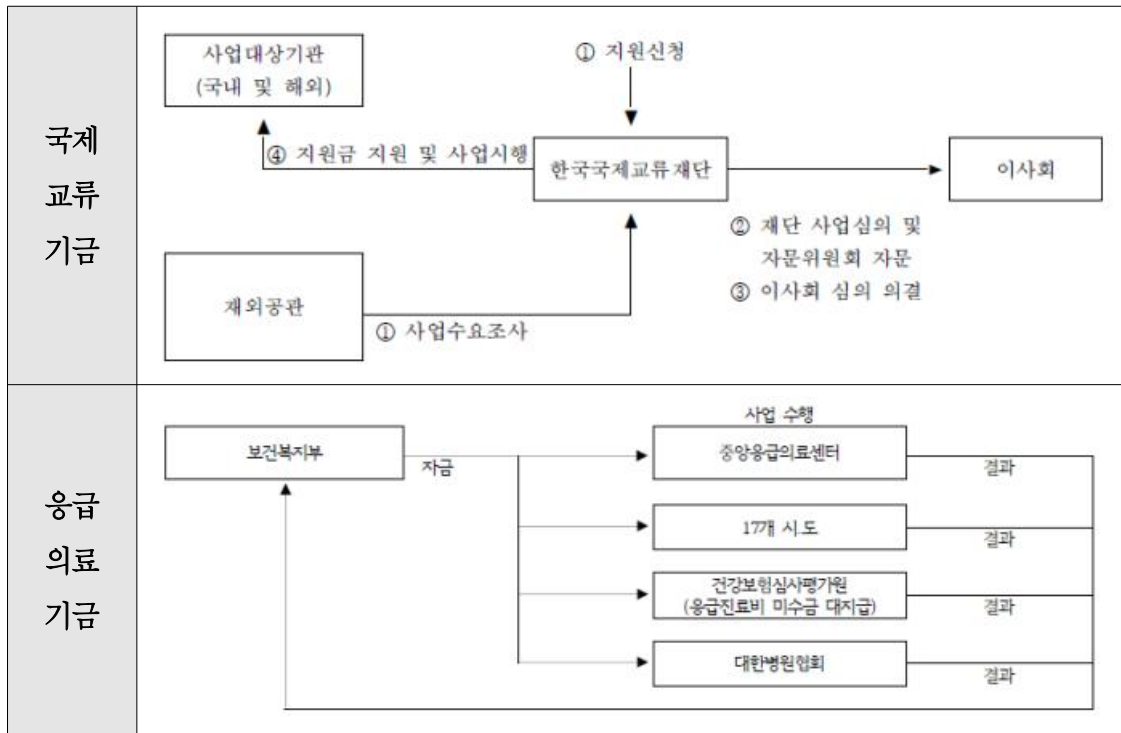
국제교류기금						
구분	17년(누계)	‘18년 실적		‘19년 계획		
		당년	누계	당년	누계	
총 조 성	• 출연금	742	93	835	20	855
	- 정부출연	409	-	409	-	409
	- 민간출연	333	93	426	20	446
	• 부담금	8,660	610	9,270	613	9,883
	• 차입금					
	- 특별회계					
	- 공공기금					
	- 한 은					
	• 운영수입					
	- 이자수입	2,414	62	2,476	38	2,514
	- 재화 및 용역	2,279	35	2,314	33	2,347
	- 판매수입	93	27	120	5	125
	- 기타	42	-	42	-	42
	- 평가계정	△296	-	△296	-	△296
소계	11,520	765	12,285	671	12,956	
응급의료기금						
구분	17년(누계)	‘18년 실적		‘19년 계획		
		당년	누계	당년	누계	
총 조 성	• 출연금	18,248	1,890	20,057	1,844	21,901
	- 정부출연	18,248	1,890	20,057	1,844	21,901
	- 민간출연	-	-	-	-	-
	• 부담금	41	-	41	-	41
	• 차입금	4,000	212	4,212	300	4,512
	- 특별회계	-	-	-	-	-
	- 공공기금	4,000	212	4,212	300	4,512
	- 한 은	-	-	-	-	-
	• 운영수입					
	- 이자수입	1,090	142	1,232	131	1,363
	- 재화 및 용역	-	-	-	-	-
	- 판매수입	1,090	142	1,232	131	1,363
	- 기타	-	-	-	-	-
	- 평가계정	-	-	-	-	-
소계	23,379	2,163	21,432	2,320	23,752	

*출처: 기획재정부(2019)

<참고> 기금별 운영체계

(남북협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국제교류기금/응급의료기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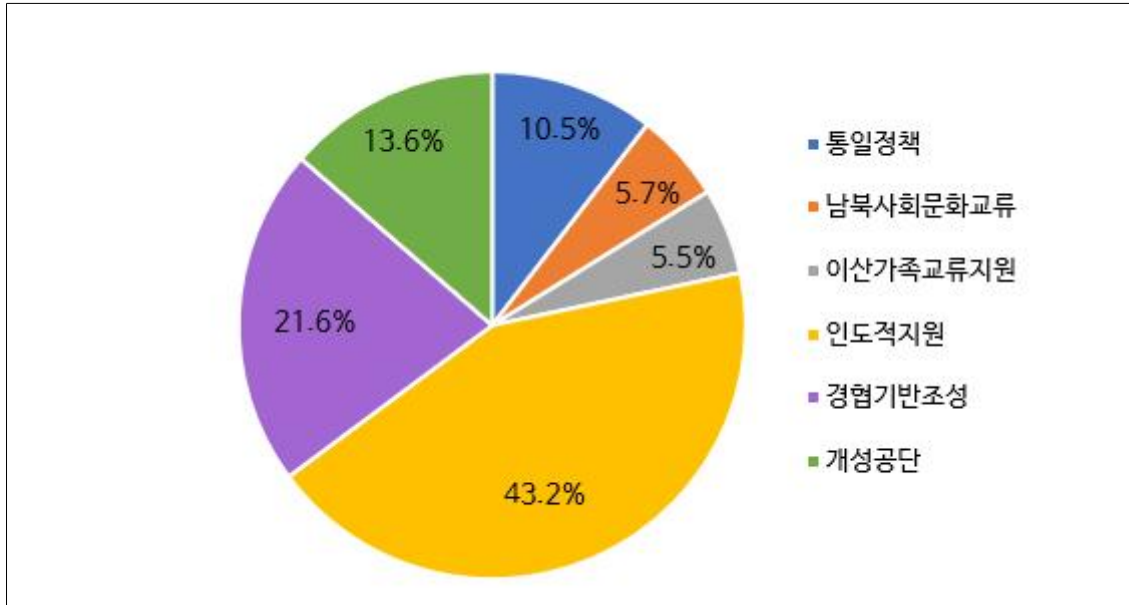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2019)

라. 분야별 기금 지원 현황

-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는 재원으로 다양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 남북협력기금이 사용되는 분야는 주로 통일정책, 남북사회문화교류, 이산가족교류지원, 인도적 지원, 경험기반조성, 개성공단 관련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통일정책은 2019년 11월까지 집행액 중 10.5%를 차지하며, 남북사회문화교류는 5.7%, 이산가족 교류지원은 5.5%, 인도적 지원은 43.2%, 경험기반조성은 21.6%, 개성공단은 13.6%를 차지함

<그림 5> 2019년 11월, 남북협력기금 전체 집행액/분야별 지출액



(1) 인도적 지원

□ 인도적 지원을 위해 지출된 기금은 전체 지출액 대비 43.2%로 가장 높은 비율임

- 인도적 지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으로 정부는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해야한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인도적 지원을 함.
- 인도적 지원은 정부가 직접지원하기도 하지만 민간단체, 국제기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추진되어 왔으며 비교적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됨
- 주로 식량, 의료물품 등을 지원하며 홍수나 폭염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구호물품을 보내기도 함

(2) 이산가족 교류 지원

□ 이산가족 교류지원 기금은 5.5%로 2019년 지출된 금액에서 가장 낮

은 비율임

- 남북한이 분단되며 오랜시간 서로 만날 수 없거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이산가족 교류를 위해 기금을 지원함
- 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한 남북한은 1990년부터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 예를 들면 2007년 제18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시설 구축 및 운영경비·통신비 등에 3억 4천여만 원을 기금에서 지원하였음
 - 또한 이산가족 교류 제도화 및 정례화하기 위하여 <이산가족정보 통합>센터를 설립하는데 비용을 지원하였음
 - 2015년에는 이산가족영상편지 제작과 유전자 검사 비용 등에 필요한 재정을 기금에서 지원함

(3) 남북 사회문화 교류지원

- 남북간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지출은 이산가족 교류지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체 지출액 중 5.7%를 차지함
 - 사회문화 교류는 남과 북이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적인 화합과 협력의 계기를 만들어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들이 포함됨
 - 사회문화교류는 비교적 국내·외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분야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어옴
 -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지원분야로는 체육, 종교, 문화예술, 학술, 교육 등으로 특히 체육 및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류가 종교나 학

술, 교육 등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음

- 특히 2011년과 2019년 한국의 유명가수들과 아이돌이 북한에 방문해 공연을 하기도 하였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활동하기도 함

<표 8> 남북협력기금 요약

구분	내용
설치근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남북협력기금법 제3조」 • 목적: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
설치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운용개시연도: 1991년)
주무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관리주체: 통일부 장관)
구성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협력기금법 제4조 (기금의 재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자금 2.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기금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주민의 남북왕래에 필요한 경비지원 • 남북간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남북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또는 용자 •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지원 등
여유자금 운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정기예금, CD, MMDA 등) • 국채, 공채의 매입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 기타 유가증권(수익증권/MMF 등, 연기금투자폴로 한정)
회계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회계기준

* 출처: 기획재정부(2018)

2. 남북교류 현황

1) 기타 남북교류 현황

- 이외의 남북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금강산 등 관광관련 인적 교류를 제외한 남북 인적 교류 추이는 다음 <표 9>와 같음
 - 개성공단 등 경제분야, 예술 체육 종교 등 사회문화분야, 대북지원분야, 이산가족분야 등 남북왕래인원을 집계하였음
 - 2010년 남북인교류는 천안함 피격사건(3.26), 연평도 포격 도발(11.23)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방북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1년의 경우 천안함 폭침에 의한 5.24조치 등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지역의 방북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개성공단의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방북인원은 꾸준히 유지되었음
 -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인력철수로 남북인적교류 인원이 전년(120,360명)대비 43,817명(36.4%) 감소하였으며, 2014년의 경우 개성공단 재가동,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인천아시안 게임 개최 등으로 남북왕래인원이 129,394명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하였음
 - 2015년 남북인적교류는 개성공단사업, 사회문화교류 및 대북 인도지원 등 민간교류 활성화,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에 따라 132,101명으로 전년(129,394명) 대비 2.1%증가하였음
 - 2016년 남북인적교류는 2월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전년(132,101명)대비 88.8% 감소한 14,787명으로 감소하였음

<표 9> 남북 인적 교류 추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130,251	116,061	120,360	76,543	129,394	132,101	14,787	115	7,498
북한 방문	130,119	116,047	120,360	76,503	129,028	132,097	14,787	52	6,689
남한 방문	132	14	0	40	366	4	0	63	809

* 출처: 통일부(내부행정자료)

□ 남북화물 물동량 추이는 다음 <표 10>과 같음

- 철도는 2007년 12월에서 2008년 11월까지만 운행되었으며, 항공기는 인원수송에 한정되어 있음
- 2014년 나진-하산 물류사업 관련 석탄시범운송 등에 따라 남북화물 물동량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남북간 물적 왕래가 현저히 감소하였음

<표 10> 남북화물 물동량 추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차량	293	209	245	133	259	278	30	0	9
선박	1,068	2	1	1	41	255	0	0	0
철도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계	1,465.0	211.0	245.5	133.5	299.0	532.2	30.0	0.0	9.0

* 출처: 관세청 통관자료

□ 남북교역액을 기준으로 본 남북 교역 추이는 다음 <표 11>과 같음

- 실질교역수지는 대북 무상지원(민간, 정부), 경수로 건설, KEDO 중유, 경제협력사업(개성, 금강산, 사회문화, 기타)금액을 제외하고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의 교역액만을 비교하였음
- 2014년 남북교역액은 23억 4,264만 달러로 전년(11억 3,585만 달

러)대비 106.2% 증가하였음. 이 중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이 99.8%를 차지하였으며, 상업적 거래는 23억 3,851만 달러로 106.4% 증가, 비상업적거래는 413만 달러로 전년대비 40.2% 증가하였음

- 2015년 남북교역액은 27억 1,448만 달러로 전년(23억 4,264만 달러)대비 15.9% 증가하였음, 이 중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이 99.6%를 차지하였고, 상업적 거래는 27억 430만 달러로 전년대비 15.6% 증가, 비상업적 거래는 1,018만 달러로 전년대비 146.3% 증가하였음

<표 11> 남북 교역 추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반입	1,043,928	913,663	1,073,952	615,243	1,206,202	1,452,360	185,523	8	10,540
반출	868,321	800,192	897,153	520,603	1,136,437	1,262,116	147,038	903	20,732
계	1,912,249	1,713,855	1,971,105	1,135,846	2,342,639	2,714,476	332,561	911	31,272

* 출처: 통일부(내부행정자료)

□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삶의 질 향상 등)을 개선하며, 우리의 인도주의적 동포애를 전달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대북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2>와 같음

- 대북지원 현황은 정부와 민간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전달한 지원 및 구조물품의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하였음. 지원주체별로 정부와 민간으로 구별되며 지표 값이 클수록 대북지원의 규모가 큰 것을 의미하고 있음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 식량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제기되었고, 1995년 수해로 북한이 국제사회 등에 지원을 요청해온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음

○ 1995-2017년 간 대북지원 총액은 3조 2,871억원 임

<표 12> 대북지원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정부 차원	무상 지원	204	65	23	133	141	140	2	0	12
	식량 차관	0	0	0	0	0	0	0	0	0
민간 차원 (무상)	민간 차원 (무상)	201	131	118	51	54	114	28	11	65
총액	총액	405	196	141	183	195	254	30	11	77

* 출처: 통일부(내부행정자료)

2) 2018-2020년도 주요 남북협력기금 지원 의결(안)

□ 최근('18-20)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를 통해 의결된 주요 지원 의결(안)은 <표 13>과 같으며 그중 몇 가지 의결(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20년 겨례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겨례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 사업비와 편찬사업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겨례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에 기금 무상 지원
- 2020년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판문점 남북정상회담('18.4.27)·남북미 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19.6.30) 등으로 평화의 상징이 된 판문점 견학을 개선,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소요경비 지원

- 2019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 아카이브(자료저장소) 구축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유물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자료저장소)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경비 6억 4천만원을 지원
 - 지난 12년간 진행된 공동발굴 유물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각계에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어 남북협력사업의 성과가 국민에게 확산·공유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18년 남북공동 유해발굴 자재장비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남북공동 유해발굴에 필요한 지뢰 제거용 장비와 도로 개설용 장비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7억 3천5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평양공동선언(’18.9.19)」의 부속합의서로 체결된 「관문점선언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비무장지대 내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진행에 합의한 데 따른 것

<표 13> 2018-2020년도 주요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개최일시/ 회차	안건
2020.1.15.~2020.1.21., 서면/ 제311차 협의회	① 관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②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경비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④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⑥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⑦ 겨례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⑧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개최일시/ 회차	안건
2019.11.12.~2019.11.18., 서면/ 제308차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지원(안) ②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안) ③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2019.7.29.~8.2, 서면/ 제307차 협의회	2019년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 아카이브(자료저장소) 구축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2019.3.25.~2019.4.3., 서면/ 제304차 협의회	DMZ 평화둘레길 조성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2018.11.14.~21, 서면/ 제299차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②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③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정상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④ 남북공동 유해발굴 자재장비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안)

*출처: 통일부 보도자료(<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release>)

III. 북한인력양성사업 및 기금지원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1. 조사설계

가. 인터뷰 개요

- 본 연구는 통일부가 향후 북한인력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기금 지원 전략수립을 위하여 1차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 북한인력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기금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나. 인터뷰 대상

- 인터뷰 대상은 북한사업에 대한 연구 또는 기금 전략 수립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였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우선으로 섭외하였음. 이외에도 다수의 북한 관련 연구, 기금체계 연구 등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음

<표 14> 인터뷰 대상

연번	이름	소속
1	권○현	성균관대학교
2	김○경	제주대학교
3	이○재	안양대학교
4	서○석	안양대학교
5	이○구	국회예산정책처
6	김○진	국회의원 보좌관
7	주○진	경기도의회
8	이○현	국회입법조사처
9	이○애	인천연구원
10	하○지	경남연구원
11	조○형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다. 인터뷰 내용

□ 북한인력양성사업 활성화 방안

- 북한사회의 발전과 통일비용 절감을 위해 북한인력양성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의 교류 및 협력 필요성 동의여부 및 활성화 방안
- 북한인력양성사업이 정치적 영향력에 벗어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
- 북한사회의 실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사업을 위해 요구되는 분야에는 무엇이 있는지, 각 분야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 북한인력양성사업의 활발한 정보공유와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업운영·성과관리 및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방안

□ 기금지원체계

- 남북협력기금지원체계의 투명성 확보(재량범위의 모호성, 의회견제의 어려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 높은 국가재정의존도는 중장기적 비전에 입각한 정책자금을 마련하는데 한계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남북협력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 남북관계가 안정적인 시기에는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시기에는 계획대비 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되어 통상적으로 5-60% 수준의 집행률에 그침. 남북협력기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예산기획과 집행 방안
-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남북협력기금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라. 인터뷰 방법

- 전문가 인터뷰는 2019년 12월 30일부터 2020년 1월 17일까지 18일간 진행되었으며, 질문지 배포 후 서면과 유선, 대면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음

2. 북한인력양성사업

가. 문제점

□ 북한인력양성사업 분야의 교류 및 협력 부족

- 북한인력양성사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남북한 교류현황을 보면 대부분 비정치적·경제적인 사회문화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음
- 특히 방송·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교류에 비하여 학술분야의 교류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류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대북지원 또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 긴급구호, 의료지원 등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및 학술 분야의 지원이나 직업훈련·기술전수 등과 같은 지식공유 지원은 미흡함
- 전체 남북협력기금에서 인도적 문제해결(이산가족교류지원, 구호지원, 민생협력지원)에 가장 많은 프로그램과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교육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 장기적·지속적 지원사업의 부재

- 북한인력양성사업은 IT분야, 회계, 의료 등의 분야에서 연수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되어 왔는데 장기적·지속적 사업보다는 일시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특히 정권이나 국제 정세에 따라 남과 북의 관계 변화가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원사업이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단순한 소모성 지원으로 전락할 수 있음.

- 2007년 「북한 의료인 교육훈련사업」 이후 2014년 「북한 경제인력 양성사업」 사이에 주목할 만한 신규 사업을 발견할 수 없었음
- 인력양성사업은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개발된 인적자원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우며,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북한인력양성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제공 부족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 IT분야, 회계, 의료 분야 등에서 인력양성사업이 진행되었으나, 북한사회의 실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진행되지는 못함

- 2012년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경우 농림수산업이 23%가량으로 산업구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중화학공업·제조업 관련 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북한의 산업구조와 향후 산업발전,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려해보았을 때 농업기술의 선진화, 제조업 및 중화학공업의 기술전수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기금지원은 ①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② 개성공단 조성사업 ③ 관광·경공업·농업 등 분야별 경제협력사업 ④ 민간기업 대출 및 교역·경협 보험 등이 있는데, 각 분야별 직업교육, 기술교육 등으로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보건지원 등 인도적 차원에서 세계 각국과 여러 NGO단체들이 도움을 주면서 직업훈련이나 기술전수에 대한 관심을 갖기도 함. 하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한 교육을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음
- 남한의 대북 지원은 통일준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바라볼 때, 통일 이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화 과정을 겪는다면 막대한 통일비용을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
 - 과거 소련의 해체과정에서도 러시아의 고급 인력 상당수가 적절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회변동 속에서 사회적 지위가 하향이동하거나 해외로 유출된 경우가 많았음(강일규, 2008)

□ 남한에서 지원하는 북한인력양성사업에 대한 북측의 관심 부족

- 인력양성사업은 북한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지도 매우 중요함
- 현재 남한 정부와 민간 교육기관, NGO등에서 북한을 지원해줄 경우에도 매우 제한적인 수준과 방법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 북한에서 남한이 지원하는 인력양성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현황 파악·정보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어야만 북한상황에 필요한 인력양성사업을 계획할 수 있음
- 다만 최근 김정은 집권 후 전통적인 계획경제 인재양성에서 경제개발 인재양성으로 전환한 점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만 인력양성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보임

- 사업의 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의 부재
 - 오랜 기간 통일준비의 일환으로 북한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과정과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채 운영되어 있음
 -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분야별·산업별 인력양성을 위한 시설, 장비, 정책, 교·강사 수준 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성과를 관리 및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함
 - 예를 들어 과학기술인력양성사업의 경우 북한 내 과학기술 인력의 규모와 분야별, 기관별 분포, 수준을 파악한 사업을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정보와 자료로 인해 대부분 추측되는 자료로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을 기획 및 진행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공동 관심분야 발굴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하여
 - ‘인력양성사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북한과 공감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학술교류의 경우 한반도 역사, 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 농축산 과학기술(방역) 등 남·북한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학술분야를 먼저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음

이념적으로 상이한 북한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우선적인 교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한반도 역사와 관련한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 분야는 이념적으로 큰 대립이 없으면서 서로 공감 및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 조○형 박사

학술 및 인적자원개발, 지식공유 등의 교류는 정치적으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남북간 상호교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상호간 인적네트워크와 연구기관간 상호교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역사, 문화 유산 등을 중심으로 한 남북공동조사, 학술 세미나 개최, 남북 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상호 공동 연구 추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 이○현 박사

백두산 화산 등 남북 공동 과학기술교류, 가축 바이러스(돼지 열병 등)에 대한 공동 방역대책 사업 등 남북에게 있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이나 분야 등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김○진 보좌관

- 인적자원교류를 위한 연구논문 및 인적자원 공유 DB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안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한 연구 자료를

공유하는 것을 어려울 수 있으나 인문사회분야의 연구물이나 기술·과학분야의 기초연구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이런 연구물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학자들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임(이춘근 외, 2016)

- 또한 연구자 정보 DB시스템을 만든다면 학자간의 교류가 더욱 풍성해지고 나아가 네트워크 형성, 공동조사,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전문가 자문에서는 (가칭)남북공동협력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현실적으로 공동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어렵다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류하거나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학회’나 ‘포럼’등을 공식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이나 전문기술학교 등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분야별 연구보고서 및 연구논문의 공유 DB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군사관련 R&D와 같은 내용이 구축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지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양한 연구결과는 국외의 다양한 이론과 방법을 수용하고 있어 복한 인력에 상당한 지적 자극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회나 민간차원의 교류가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1-2년 정도 **정기포럼을 형성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분야간 교류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서○석 박사

협력대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초기에는 한정된 분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역사분야(고구려, 고려 역사 등),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남북 공동 협력 대학(가칭)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 교수

- 제3국 또는 국제기구와 연계한 학술·교육네트워크 구축: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남·북 관계는 국내·외 정치적 영향력을 매우 많이 받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네트워크가 쉽게 단절될 수 있음. 이에 제3국 또는 국제기구와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가령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한국이 제공하되 실제 교육장소나 운영은 제3국이 (예: 스위스) 담당할 수 있음.
 - 또한, 연구자 네트워크에 미국-호주-중국 등 타국가의 연구자를 포함한다면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을 피할 수 있음
 - 한 예로 2007년 「북한 의료인 교육훈련사업」의 경우 정부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연수비용을 지원하고 독일NGO 단체 독·조의학협회 북한의료인력을 초청하여 비교적 장기적·지속적 교육이 이루어짐

한국과 북한 둘 사이의 인적 교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위를 좀 더 확장하여 동아시아 연구자들 간의 인적교류 네트워크의 형태로 추진한다면,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희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혹은 태평양 인적교류 네트워크의 형태로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의 연구자들까지 같이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도, 또 북한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이○현 박사

- 전문가자문에 따르면, 남·북이 직접적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제3의 기구를 통해 인력양성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제안함
- 관련하여 앞서 언급된 공동대학 또는 학회 설립 역시 제3국이나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설립한다면 보다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임

현재까지도 남북관계는 격동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국내외 정세에 따라 소통의 창구가 수사로 여닫아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의 직접적 소통채널보다는 국제기구 등 제3의 기구를 통하여 인력양성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을 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주○진 박사

- 공동기구(기관) 마련: 북한의 실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 전문가자문에서는 북한인력양성사업 분야로 IT를 비롯한 바이오 산업, 환경산업, 사회과학(행정, 교육, 심리, 경영, 사회복지 등)분야, 농업기술, 도시계획 및 개발, 경제, 의료, 해양,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언급됨
- 각 전문가마다 우선순위로 언급한 중요 분야는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기구(기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함
 - 기구(기관/단체) 설립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 자문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방안.
 - 남북학술조사기관이나 연구기관, 공동기구 등을 마련하면 교류를 지속하고 실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속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됨

□ 중장기 차원의 단계적 계획 마련 및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수립: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 전문가자문에서도 북한인력양성사업에 대해 단기적 성과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함. 따라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세부적으로 단계적 계획을 설정한 후 점진적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장·단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단계별 계획에 따른 성과평가(점검) 실시

(남북관계 상황 호전시) 각 단계별로 가능한 남북인력양성사업 **협력 목표를 도출하고 세부 추진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김○진 보좌관

북한과의 교류 수준에 따라 사업목표의 수준을 높이고 점진적으로 평가의 질을 확보해 나가려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 서○석 박사

- 또한 앞서 언급한 남·북한 연구자 DB가 구축되어 공유되면 북한 상황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게 됨으로 현황과약을 통한 목표수립 및 성과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북한 내 대학, 연구소 인력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북한인력양성사업의 **성과목표를 구체화하여 단기, 장기적 차원의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형 박사

□ 종합

- 전문가자문에서 언급된 제안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경향을 나타냄

- 예를 들어 남·북한 공동관심 분야를 발굴하게 되면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뿐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음
 - 공동관심 분야(예: 돼지열병 관련 예방교육, 문화재, 역사 연구 등)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민감하게 좌우되기보다는 남·북 모두 중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
- 또한 제3국이나 국제기구와 연계한 학술·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기구를 마련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민감성을 다소 희석시킬 수 있으며 교류·협력이 증진되고 기관을 통한 체계적임 프로그램 관리 및 성과평가가 용이해질 수 있음

한국, 북한 2개국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보다는 일본, 중국, 혹은 미국, 혹은 여타의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이 된다면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 박사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채널을 마련하기보다는 제3의 기구를 통한 운영과 성과관리,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만 국내외 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이 잘 구축되었을 때 남북의 직접적인 직속기관 등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보입니다.

- 주○진 박사

- 연구 및 인력 DB 구축 역시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됨
- 단계적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 역시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됨
 - 정부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정권변화에 따라 내용을 쉽게 변경하거나 정책추진을 중단하기 어려워 짐

남북 정상이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선언문을 채택하거나 이를 토대로 북한인력양성사업 또는 남북한 인력양성 중장기 종합계획(10년 단위)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계획의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정권의 변화에 따른 정치적 요인에 의한 협력 및 교류사업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지속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재 교수

- 즉 전문가자문에서 제시된 4가지 대안은 각각의 문제에 독립적으로 적용되기 보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예: 공동관심 분야 개발 → DB구축 → 네트워크 형성 → (제3국을 포함한)공동기구 설립 → 체계적인 성과관리·평가 시스템 도입

3. 기금지원체계

가. 문제점

- 현행법상 기금지원체계의 비합리성(투명성 확보 부족): 재량범위의 모호성 및 의회 견제의 어려움
 - 현행법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은 통일부 장관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타당성, 규모 및 조건 등을 검토해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 재량의 범위가 애매하게 규정돼 있어 심사보고서 제출 없이 기금지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잦다는 평가가 있음
 - 또한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등을 심의·의결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정부가 추천권 및 임용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참석률이 저조해 서면회의로 대체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임명된 위원들이 임용권을 가진 정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 의회에 의한 견제가 어려움

- 높은 국가재정 의존도
 - 2018년 기준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을 살펴보면 총액이 3천 500억 원 가량 되는데, 정부출연금인 637억 원으로 약 18% 정도를 차지하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2천 780억 원 가량으로 약

78.5%를 차지하여 전체 조성액의 96.5%에 이룸

- 국가재정에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재무구조 자체가 취약하여 사업에 따라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기획 및 집행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즉 남북협력기금은 사실상 뚜렷한 별도의 수입원 없이 국가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회의결을 거쳐 확보해야하는 정부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 비전에 입각한 정책자금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기금운용에 대한 투명성 부족

- 정부예산이 대체적으로 ‘투명성’ 확보를 매우 중요시하는 것에 비하여 남북협력기금은 상당부분 비공개로 집행됨
- 남북관계(대북협상)를 고려하여 구체적 항목을 공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예산부처나 국회에서 해당 운용내용을 일정부분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특히 ‘기타경협사업(비공개)’ 항목의 경우 예산규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집행내역을 알 수 없음
 - 하지만 모든 항목이 공개될 경우 정부의 정책의지를 현실화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함
 - 한 예시로 북한기술인력양성에 배정된 항목에 대하여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술을 우리 예산으로 가르쳐준다는 비판이 제기됨

□ 남북관계 특수성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 예산기획 및 집행의 어려움

-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은 정치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으며

내부적으로 국민여론, 외부적으로 여러 국가 간의 국제관계와 북한
의 태도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달라짐

-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는 시기에는 남북협력기금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시기에는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낮아짐(이효원·한동훈, 2012; 이무일, 2009)
 - 통상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은 5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전반적으로 집행이 미진한 것으로 평가받음
 - 2019년 남북협력기금은 2016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1조원
대로 증가했으나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의결하고도 집행
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예산을 기획하고 실제 집행하는데 있어 중
장기적 예산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고 수립 후에도 집행하기가 어
려움

□ 기금지원의 평가체계 미비

- 남북협력기금은 타사업 기금과 달리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이 존
재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은 적이 없으며
회계검증 위주로만 평가가 이루어짐
- 이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지속됨
 - 사업별 기금 지원의 적정성, 정책효과, 기여도, 지속가능성,
확산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적합한 지표를 발굴하고
성과측정 방법론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나 인력·예산·남북관
계의 특수성·관련연구의 부족 등으로 평가체계가 마련되지
못함

- 이러한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는 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연계되고 타당성 평가에 따라 사업의 확대나 축소, 추가적인 사업 시행 등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평가체계의 확충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임

나. 개선방안

□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확보방안

-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자율성이 높고 투명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심사보고서 제출 없이 기금지원이 결정되는 등 재량의 범위가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음
 - 남북협력기금의 운영/관리를 심의의결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정부가 전적으로 추천권과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 참석률 저조로 인해 서면회의로 대체하는 등의 사항이 낮은 투명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심사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의회의 심의/견제가 필요함
 - 남북협력기금지원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국회가 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 통일부장관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함

남북협력기금의 운영/관리를 심의의결하는 교추협(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정부가 전적으로 추천권과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점, 교추협의 참석률 저조로 인해 서면회의로 대체하는 등의 사항이 낮은 투명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 세금인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국민 대표 기관인 의회의 견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추협 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의회에도 부여해 정부 예산을 심의/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진 보좌관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부인 의회가 보다 활발히 개입할 수 있도록 기금지원의 실태조사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 혹은 강화하여 제도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이외에도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장치들이 담긴 조항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현 박사

-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2019년 5월 9일에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에 수탁기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심사과정에 실질적 참여 보장하여야 함(박명재, 2019)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중 3명이상으로 규정된 민간위원의 수를 7명으로 증원하고 그 중 4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기금운용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있어 감시·감독 강화해야함(박명제, 2019)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심사보고서 제출 의무화해야합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에 수탁기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심사과정에 실질적 참여 보장해야하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중 3명이상으로 규정된 민간위원의 수를 7명으로 증원하고 그 중 4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기금운용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있어 감시·감독 강화해야 합니다.

- 조○형 박사

- 사업비 사용결정에 있어 형식적인 심의가 되지 않고 원칙과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민간 혹은 민관합동 평가단(민간)을 운용하여 상시 감시 및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야 함
 - 검증이 가능하도록 원칙과 체계를 구축하고, 증빙하게 하는 등 사업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선정절차 및 과정, 집행내역 등 공개가 필요함
-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오랫동안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하지만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 운용 기획, 수행, 평가 모니터링 또는 평가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함

-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법과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확립하는 방법이 필요함
- 기금운용 계획단계부터 집행, 결산까지 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
- 심의위원회 구성은 정부와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여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부인의 회가 보다 활발히 개입할 수 있도록 기금지원의 실태조사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 혹은 강화하여 제도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

- 국내총생산 대비 국채 비율을 건전한 수준으로 유지하다가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관련 조세 인상이나 국채 발행을 통해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기금 적립보다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대한 유연성 있는 대처에 유리함
 - 재정조달 편향성으로 인해 재정건정성이 문제가 되므로 재원조달의 다양화가 필요함
 - 교류협력 당사자 및 관련 사업자 기금 부담, 새로운 기금의 출연, 특수 목적세 신설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남북협력기금은 최우선적으로 광범위한 사회적/국민적 합의 위

에서 추진되어야 함

- 정부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함
 - 현재의 재무구조는 필연적인 상황으로 정부의 출연금 등을 바탕으로 시작하고, 학술교류 및 인력양성이 활성화 될 경우 자연스럽게 기업의 후원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재단설립을 통한 범국민적 모금운동,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하며 기업 후원의 경우 세금,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해야 함
- 남북협력기금으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을 고려해보아야 함.
물론 수익성을 내는 데에 한계가 있고,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단절될 우려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사업이 단절될 지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남북협력기금의 높은 국가재정의존도를 낮추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 기본계획(5년-10년 단위) 수립이 필요함

애초에 유연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예비자금의 비율을 높게 책정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충분히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기금 확충에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예컨대 정치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순수하게 학술적으로 연구가 가능한 북한의 자연 생태계 연구 등은, 물론 현지조사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한국에서만 연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현 박사

남북관계의 특성을 반영할 때 북한인력양성사업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인력양성사업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남북 정상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선언문을 채택하거나 이를 토대로 북한인력양성사업 또는 남북한 인력양성 중장기 종합계획(10년 단위)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계획의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정권의 변화에 따른 정치적 요인에 의한 협력 및 교류사업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지속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이○재 교수

- 관광,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운용 등 수익사업을 직접 운용, 활성화시켜 이를 재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남북의 직접적 소통채널보다는 국제기구 등 제3의 기구를 통하여 인력양성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을 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임

- 국제금융기구가 실시한 개혁개방 국가(베트남, 중국, 몽골 등)에 대한 지원 사례가 있는 만큼 북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에 국제 금융기구 재원 활용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를 남북협력기금의 사업계획에 포함시킨다면 일정부분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효율적인 예산기획과 집행 방안

- 현실적으로 장기적인 인프라 조성 사업을 계획하기 보다는 단기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려는 계획이 현실적임
 - 남북협력기금은 남과 북의 관계에 기초하므로, 일반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함.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여론 역시 무시할 수 없음
 - 정부가 아무리 기금을 통한 대북 지원 의사를 밝혀도 북한이 이에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임
 - 남북협력기금의 집행규모는 해당 시기의 남북관계의 변화 등에 영향을 많이 받음. 그러면서 동시에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도와 통일 인식, 통일 편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클수록 집행규모는 커질 수 있음
- 적극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국민인식에 큰 관심을 두고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목표와 성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정치적 요인이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 일관된 장기적인 정책기조를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업별 논리모형 개발과 평가시스템 등 구축 및 결과 공개를 통해 사업의 신뢰도를 높인다면, 정치적

요인과 무관하게 집행의 당위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적극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국민인식에 큰 관심을 두고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목표와 성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정치적 요인이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하○지 박사

- 정권변화에 따른 영향, 남북관계의 좋고 나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에 대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함
 - 남북의 정세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함
- 예산계획을 세울 경우 IT분야에 대한 양성사업이 가장 시급함
 -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북한 역시 영어나 인터넷 등 글로벌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사업유형에 대한 집행 모니터링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임
 - 남북협력기금의 특수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예산기획과 집행을 하는 것은 어려움
 - 현재까지의 예산사용 및 집행 내역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비와 특수상황 발생할 때 사용하지 못했던 예산 등을 분석해서 경상경비와 특수경비로 나누는 것이 필요함

남북협력기금의 특수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예산기획과 집행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까지의 예산사용 및 집행 내역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비와 특수상황 발생할 때 사용하지 못했던 예산 등을 분석해서 경상경비와 특수경비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 김○경 교수

- 유연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예비자금의 비율을 높게 책정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충분히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기금 확충에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고려해야함
 - 정치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순수하게 학술적으로 연구가 가능한 북한의 자연 생태계 연구 등은 물론 현지조사가 필요하기도 함
 - 현재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 예산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세부 예산 내역 공개와 이에 따른 국회의 예산 심사가 수반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항목의 공개가 어렵다면 집행 항목의 유형을 구분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2019년 상임위 예산심사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에 대해 심사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의결에 이르지 못했음

- 가장 큰 이유로 통일부가 예산 세부 내역을 비공개함에 따라 기인된 것으로, 남북협력기금 세부 내역의 비공개는 비단 문재인 정부 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었음
- 장기적으로는 집행 항목 공개(일부에서 점차 확대)를 통한 투명성 제고

근본적으로 예산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세부 예산 내역 공개와 이에 따른 국회의 예산 심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진 보좌관

- 제3의 기구를 통한 운영과 성과관리, 평가 등이 이루어져야만 국내외 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평가 등을 위한 성과가 단기간 내 산출되기 어렵고, 측정 또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대외경제협력기금이나 공적개발원조 등과 유사한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혹은 집행을 뿐만 아니라 적절성, 효과성(일반사업들과 같이 논리모형 등을 통해 사업 목표를 통한 효과를 설정해둘 필요가

있음), 영향력,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고려해야 함.
또한 평가대상을 분야별 혹은 이슈별, 사업형태별(프로젝트, 연수단 등)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음

- 남북협력기금 운용 기본계획(5년-10년 단위) 수립에 기금 평가시스템 구축 포함
 - 남북협력기금 평가기준의 명료성, 평가추진체계의 적정성, 평가인력의 적정성, 예산의 합리성, 평가방법의 적절성, 평가기준의 적정성, 평가절차 및 과정의 적절성 등을 고려한 평가체계 구축 필요
- 평가결과의 충분한 공개와 시기의 적절성, 평가결과의 활용(사후 조치 점검, 사업간 중복조정 및 연계에의 활용, 성과부진 및 문제 사업 개선에의 활용, 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인식 제고 등)
- 타 기금사업의 평가기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되, 남북협력기금의 특수성을 반영한 항목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하는 방안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
- 정부의 타 기금과 같이 기금운용성과보고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됨. 다만, 남북협력기금의 특성상 집행률, 성과를 등 정량지표 보다는 정성적인 지표를 적용한 성과보고서 작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정부의 타 기금과 같이 기금운용성과보고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북협력기금의 특성상 집행률, 성과를 등 정량지표 보다는 정성적인 지표를 적용한 성과보고서 작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에 박사

- 행정부의 집행기능에 대한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감시체계는 외부, 즉 입법부의 감시권한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내부에서도 자체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는 있겠지만, 국회에 좀 더 많은 감사 권한과 기능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함
- 또한 자체적으로 평가시스템을 강화할 필요는 있음.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남북협력기금만을 위한 예산 집행 평가지표를 별도로 구축하고, 내부기관에서라도 자체적인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사전평가 즉 형성평가 중심이 되면서 동시에 사후평가는 정량평가 중심으로 산출(효과)평가 중심이 되는 것이 초기의 평가방식이어야 함
- 장기적으로 산출 → 효율성평가 → 효과성 평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

지금 역시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남북관계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에 대한 장치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 안보상 매우 중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을 공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의 보고 등을 통한 견제 시스템 마련, 홈페이지를 통한 상세내역 공개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진 박사

사전평가 즉 형성평가 중심이 되면서 동시에 사후평가는 정량평가 중심으로 산출(효과)평가 중심이 되는 것이 초기의 평가방식이어야 합니다.

- 서○석 박사

남북한 인력양성 중장기 종합계획(가칭)을 토대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목표, 성과지표 체계를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북한 인력양성 사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가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재 교수

[부록A] 민간 남북경제협력사업 현황

연번	기업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지역	금액 (승인기준)	사업승인일
1	대우인터네셔널 (합영)	삼천리총회사	남포공단 사업	남포	512만불	95.05.17
2	녹십자(합작)	광명성총회사	유로키나제 생산	평양	311만불	97.11.14
3	(주)일경(합영)	개선총회사	금강산 생수 개발·판매	금강산	580만불 980만불	97.05.22 05.11.23
4	(주)아자커뮤니 케이션(합영)	명승지종합 개발지도국	TV광고 제작	평양	편당 25만불	98.02.18
5	미흥식품(합영)	조선철산 무역총회사	수산물 채취·가공	청진, 함흥, 원산, 남포	47만불	98.03.13
6	(주)현대아산 (단독투자)	아태, 명승지종합 개발지도국	금강산 관광 및 개발	금강산	9,583만불 36,027만불	98.09.07 07.05.18
7	(주)코리아랜드 (합영)	조선묘향경제 연합체	부동산개발· 컨설팅	평양	60만불	98.08.28
8	백산실업(합영)	선봉군 온실농장	버섯류 생산	선봉	20.8만불	98.10.28
9	KT, 온세통신 (단독투자)	명승지종합 개발지도국	금강산 통신	금강산	48.5만불	98.11.11
10	(주)평화자동차 (합영)	조선민흥 총회사	자동차 제조·판매	남포, 평양	666만불 5,654만불	00.01.07 06.04.10
11	삼성전자(용역)	삼천리총회사	S/W 공동연구 개발	평양, 북경	72.7만불 690.4만불	00.03.13 09.06.26
12	한국관광공사	아태, 명승지종합 개발지도국	금강산 관광	금강산	900억원 915억원	01.06.13 06.08.07
13	(주)하나비즈닷컴 (합영)	삼천리총회사	남북 프로그램 공동개발	단동	200만불	01.07.18
14	IKD, (사)남북경제협 력진흥원(합영)	광명성총회사	고려정보 기술센터 건립	평양	400만불	01.08.22
15	(주)G-한신 (합작)	광명성총회사	유리생산 공장	평양	290만불 560만불	01.10.16 04.03.11
16	국양해운 (단독투자)	개선총회사	해상운송 (인천↔남포)	남포	619만불	01.11.21
17	(주)유니코텍 코리아(합작)	삼천리총회사	발포수지 성형 사업	평양	51.8만불	02.08.07
18	(주)평화항공 여행사 (단독투자)	명승지종합 개발지도국	평양관광	평양	-	03.08.25
19	한국광물자원 공사(합작)	광명성총회사	정촌 흑연광산 개발	정촌	510만불 665만불	03.10.14 08.05.15

연번	기업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지역	금액 (승인기준)	사업승인일
20	(주)경평인터내셔널(합영)	광명성총회사	식품가공 공장 설립	평양	240만불	04.03.20
21	(주)안동대마방직 (합영)	새별총회사	평양대마방직 북한 내륙 운송사업	평양	250만불 1,500만불	04.09.17 08.05.27
22	(주)서진인터크루 (합작)	광명성총회사	피혁제품 생산 공장	평양	880만불	04.07.07
23	(주)KT(용역)	삼천리총회사	정보통신분야 공동연구	평양	10만유로 198.2만불	04.07.23 09.04.27
24	제일유통(합작)	개선총회사	표고버섯 재배·가공	평양	54.6만불	04.08.21
25	(주)제이유 네트워크(합작)	광명성총회사	김치제조공장	평양	160만불	04.12.30
26	에스피메디텍 (용역)	조선컴퓨터 센터	의료 S/W 개발	평양	159만불	05.05.26
27	아이니무역 (합작)	개선총회사	다슬기 가공 반입	원산	15만불	05.06.15
28	(주)알티즌 하이텍(합작)	광명성총회사	CPT 개발	평양	10만불	05.09.21
29	(주)쓰리엔테크 놀리지(합작)	삼천리총회사	기계제품 생산·판매	평양	350만불	05.12.27
30	(주)대동무역 (합작)	개선총회사	강서청산수 생산·판매	남포	250만불	05.11.10
31	(주)태림산업 (합영)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	석산개발, 골재 및 레미콘 생산	개성, 남포, 해주	295만불 1,000만불	05.12.01 09.02.06
32	(주)에머슨퍼시픽 (단독투자)	명승지종합 개발지도국	금강산 리조트 운영	금강산	724억원 725.5억원	05.12.30 07.10.16
33	제일유통(합작)	개선총회사	나무 재배·판매	개성	26만불	05.12.30
34	제일유통(합작)	개선총회사	과수 재배·판매	평양	164만불	05.12.30
35	제일유통(합작)	개선총회사	소사육 생산·판매	평양	30만불	05.12.30
36	농협중앙회 (단독투자)	명승지종합 개발지도국	금강산 지점 운영	금강산	500만불	06.05.08
37	(주)현대아산 (단독투자)	민경련	건본품 운송사업	개성	11만불	06.06.22
38	아사달(용역)	삼천리총회사	디자인콘텐츠 제작	평양	25.2유로	06.07.05
39	(재)경기디지털 콘텐츠진흥원 (용역)	삼천리총회사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평양	1만유로	06.08.25
40	(주)에스엔에너지 (단독투자)	명승지종합 개발지도국	금강산 가스 공급	금강산	187만불	07.06.25
41	(주)두담(합영)	아리랑총회사	개성공단 식자재 공급	개성	50만불	07.07.23
42	(주)현대아산 (단독투자)	아태, 민경련	개성관광	개성	1,100만불	07.12.04
43	서평에너지	명지총회사	천성석탄,	남포	1,000만불	07.12.12

연번	기업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지역	금액 (승인기준)	사업승인일
	(합작)		무연탄생산			
44	(주)한국체인 (합영)	아리랑총회사	특산물 가공 판매	개성	250만불	07.12.31
45	(주)통일고려인삼 (합영)	광명성총회사	인삼 재배· 가공판매	평양	285만불	07.12.31
46	(주)아천(합영)	개선총회사	유통센터 건설·운영	개성	570만불	08.01.14
47	(주)바두바두 (단독투자)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	개성 주유소 건설·운영	개성	182.4만불	08.02.04
48	(주)독여로(합작)	광명성총회사	참깨 재배·가공	평양	25만불	08.02.25
49	파라다이스 코리아(합작)	새별총회사	섬유제품 생산	평양	1,270만불	08.06.12
50	(주)대동수산 (합영)	광명성총회사	수산물 가공	남포	500만불	08.06.20
51	(주)아천글로벌 (합영)	조선진영 무역회사	석재 가공공장 건설·운영	개성, 해주	1,530만불	08.07.10
52	(주)남북경협 (합작)	광명성총회사	스포츠 의류 생산	평양	500만불	08.10.09
53	나우코포레이션 (합작)	새별총회사	골판지 박스 생산	평양	500만불	08.10.30
54	(주)G-한신(합작)	민경련총회사	감자라면 생산	평양	240만불	08.11.24
55	(주)벤처브릿지 (용역)	삼천리총회사	S/W개발	中대련, 단동	11만불	09.03.12
56	(주)일연인베스트 먼트	아태, 명승지종합 개발지도국	비치호텔 등	금강산	13,040 백만원	10.09.29
57	다인관광(주)	아태, 명승지종합 개발지도국	펜션	금강산	3,000 백만원	10.09.29
58	(주)한양	아태, 명승지종합 개발지도국	사업자 숙소 등	금강산	1,828 백만원	10.09.29
59	(주)천호 에프엔비	아태, 명승지종합 개발지도국	식당	금강산	350백만원	10.09.29
60	대가푸드	아태, 명승지종합 개발지도국	식당	금강산	50백만원	10.09.29
61	(주)창희	아태, 명승지종합 개발지도국	식당	금강산	250백만원	10.09.29
62	금강산 코퍼레이션(주)	아태, 명승지종합 개발지도국	주점 등	금강산	831백만원	10.09.29

연번	기업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지역	금액 (승인기준)	사업승인일
63	(주)두담	아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판매업	금강산	124백만원	10.09.29
64	(주)참마당	아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판매업	금강산	86백만원	10.09.29
65	황OO	아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주점	금강산	100백만원	10.09.29
66	신OO	아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판매업	금강산	5백만원	10.09.29
67	제이앤디 헬스케어	아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건강증진센터	금강산	140백만원	10.09.29
68	레포츠라인	아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자전거 대여 등	금강산	30백만원	10.09.29
69	채널라인	아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세탁소	금강산	700백만원	10.09.29
70	디씨에프 푸드서비스(주)	아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식당	금강산	611백만원	10.09.29
71	(주)호수엔달우	아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판매업	금강산	95백만원	10.09.29
72	조은자리	아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판매업	금강산	80백만원	10.09.29
73	오대양육대주	아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판매업	금강산	60백만원	10.09.29
74	온정무역 주식회사	아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판매업	금강산	96백만원	10.09.29
75	(주)전통컬렉션	아태	판매업	금강산	5.6백만원	13.02.15
76	하나온 커뮤니케이션즈	아태	판매업	금강산	5.6백만원	13.02.15
77	부산강동골목 할매유부보따리	아태	판매업	금강산	5.6백만원	13.02.15
78	다물 코퍼레이션	아태	판매업	금강산	5.6백만원	13.02.15
79	모던	아태	판매업	금강산	4.2백만원	13.02.15
80	(주)동국테크	아태	판매업	금강산	57백만원	13.02.15
81	이OO	아태	판매업	금강산	4.2백만원	13.02.15
82	한국관광명품점	아태	판매업	금강산	12백만원	13.02.15
83	하이프렉스	아태	판매업	금강산	14백만원	13.02.15
84	네파(주)	아태	판매업	금강산	53백만원	13.02.15
85	(주)씨오팜	아태	판매업	금강산	100백만원	13.02.15

연번	기업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지역	금액 (승인기준)	사업승인일
86	아로마퀸	아태	판매업	금강산	8백만원	13.02.15
87	창영사	아태	판매업	금강산	8백만원	13.02.15
88	캐럿주얼리	아태	판매업	금강산	15백만원	13.02.15
89	아시안 하이웨이(주)	아태	운수업	금강산	-	13.07.16
90	(주)대원관광	아태	운수업	금강산	-	13.07.16
91	(주)대화관광	아태	운수업	금강산	-	13.07.16
92	문화사랑방	아태	판매업	금강산	9백만원	13.07.16
93	금강문화사	아태	판매업	금강산	1.3만불	13.10.31

*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cooperation/trade/status/>)

참고문헌

- 강일규. (2008). 북한 인적자원개발 지원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기획재정부. (2019). 2019년도 기금현황 자료
- 김철완·강인수·공영일·홍현기·이민규. (2007). 북한 IT부문 및 남북 IT교류협력 현황 보고서(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강우. (2010).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의 의미와 성과. 「통일경제」. 겨울호
- 이무일. (2009). 남북협력기금의 현황과 과제. 통일부
- 이춘근·김종선·남달리. (2016).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현황분석과 협력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효원·한동훈. (2012). 통일재정법제연구(1): 남북협력기금. 한국법제연구원
- 임강택·이강우. (2016).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통일연구원
- 통일부. (2007). 보도자료(자료배포일: 2007년 7월 2일)
- 통일부. (2008). 2008 남북협력기금 백서
- https://www.ytn.co.kr/_ln/0101_201803201803067871 (검색일: 2019년 12월 31일)
- https://www.huffingtonpost.kr/2018/01/20/story_n_19045052.html (검색일: 2019년 12월 31일)
- <http://www.kfas.or.kr/news/News0402.aspx?msgID=901&pCulture=zh-cn#sthash.jBBkBLPV.dpbs> (검색일: 2019년 12월 31일)
- <https://www.bbc.com/korean/news-44429003> (검색일: 2019년 12월 31일)

http://kofice.or.kr/c30correspondent/c30_correspondent_02_view.asp?seq=14814 (검색일: 2019년 12월 31일)

<https://www.voakorea.com/a/2616599.html> (검색일: 2019년 12월 31일)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6/globalBbsDataView.do?searchIdx=247&dataIdx=118445&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31&row=10> (검색일: 2019년 12월 31일)